

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3월 16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1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5년 3월 18일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이춘구)

□ 제안이유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(2004. 3. 22, 법률 제7212호)과 같은 법 시행규칙(2004. 9. 6, 보건복지부령 제297호)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, 사회복지·보건의료 관련 기관·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

한 사항,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·협력에 필요한 사항,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,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함.(안 제3조)

-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부시장,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, 원미구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,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·임명하며, 임명직 위원장은 부시장,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)
-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, 위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담당공무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함.(안 제5조)
-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사망·질병·품위손상 및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)
- 각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과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유급 간사는

각 협의체의 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9조)

- 각 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함.(안 제10조)
-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시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14조)
-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5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조례 내용 중 유급간사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?</p> <p>○ 협의체에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근거가 무엇인지?</p> <p>○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인데 협의체 구성에서 시의회를 배제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보는데?</p> <p>○ 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?</p> <p>○ 유급간사에 대한 경비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?</p> <p>○ 실무협의체를 두는 것은 옥상옥이라고 생각되어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?</p> <p>○ 협의체로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며 상위법에도 두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데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?</p>	<p>○ 상위법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만드는 사항으로 유급간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운영을 하면서 채용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</p> <p>○ 규정에 공동위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.</p> <p>○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역주민대표를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도 주민대표로 위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○ 법에는 없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두도록 되어있습니다.</p> <p>○ 협의체의 운영여비에서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.</p> <p>○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실무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</p> <p>○ 일면 그런 부분은 있으나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365호
의결 년월일	2005. 3. 24 (제118회)

제안년월일 : 2005. 3. 23.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에 의해 설립되는 단체이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지역주민대표를 협의체 위원으로 둘 수 있으므로 협의체 구성위원으로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
-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과 유급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법에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이나 유급간사를 두어야 된다는 근거가 없고 유급간사에 대한 명확한 경비 지급기준이 없는 등 특별한 의미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수정.

2. 주요골자

-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 2인을 포함(안 제4조 제2항)
- 협의체 간사를 무급으로 조정(안 제9조 제1항)

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 제2항 중 “실무협의체 위원장은” 을 “실무협의체 위원장·시의회 의원 2인은” 으로 한다.

안 제9조 제1항 중 “간사를 두되,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과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유급 간사는” 을 “간사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간사는” 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구성)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협의회 위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부시장·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·원미구보건소장 및 <u>실무협의회 위원장은</u>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 <p>③협의회 위원장은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협의회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간사)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유급 간사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.</p> <p>②간사는 위원장(실무위원장 포함)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</p>	<p>제4조(제정안과 같음) ①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실무협의회 위원장·시의회 의원 2인은</u> -----</p> <p>③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④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9조(제정안과 같음) ①----- ----- <u>둘 수 있다. 이 경우 간사는</u> ----- -----</p> <p>②(제정안과 같음)</p>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라 함은 제3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자문기구를 말한다.
2. “실무협의체”라 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하부기구를 말한다.

제3조(기능)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, 시행, 평가에 관한 사항
2.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·협력에 필요한 사항
3.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,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4. 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
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5.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

②협의체는 부천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·단체간의 연계·협력 업무를 수행한다.

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.

제4조(구성) ①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협의체의 위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의2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부시장·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·원미구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·시의회 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③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.

제5조(실무협의체) ①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실무협의체의 위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

하되,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.

③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·심의한다.

1. 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안건과 관련하여 협의체가 위임한 사항
3.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

④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·연구 또는 연계·협력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,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임기) 각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해촉)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·질병·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

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9조(간사)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간사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.

②간사는 위원장(실무위원장 포함)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

제10조(회의 등)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회의록)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심의사항
4. 심의결과
5. 기타 위원장(실무위원장 포함)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

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의결사항의 처리)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의견의 청취)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(이하 “관계인등”이라 한다)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4조(공청회등의 개최)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15조(협의체 운영지원)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16조(회의수당)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·전문가·관계인등에게는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7조(운영규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폐지조례)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